

# 압류 확인서

1. 압류 제품명:
2. 축산물(가공품)의 유형:
3. 제조 연월일 또는 소비기한:
4. 압류 수량:
5. 압류 사유:
6. 압류 일시:
7. 압류 장소:

압류자 소속 :

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  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※ 위 제품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압류조치된 것이므로 무단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※ 주 1) 규격: 17cm × 22cm

2) 색상: 바탕(흰색), 테두리(검은색), 글자(제목: 빨간색, 내용: 검은색)